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유해조류 군집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주민들의 생활권 주변 등 장소에서 유해조류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의 명확성을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세부적 규정을 추가 명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
- 2) 조례 전반에서 “유해조류”를 “유해야생동물”로 용어 변경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0조, 제11조)
- 3) “먹이를 주는 행위”에 대한 정의 추가(안 제2조제3호 신설)

- 4) 자구 수정 및 조문 제목 변경(안 제3조 ~ 제5조)
- 5)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(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)
- 6)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)
- 7) 상위법 인용 조항 추가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 위임 사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먹이주기 금지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2) 주요 내용

- 가)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
 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적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- 나) 조례 전반에서 “유해조류”를 “유해야생동물”로 용어 변경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0조, 제11조)
- 다) “먹이를 주는 행위”에 대한 정의 추가(안 제2조제3호 신설)
 - 안 제2조에서 “유해야생동물”을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으로, “먹이주기”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직접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으로 규정함
- 라) 자구 수정 및 조문 제목 변경(안 제3조 ~ 제5조)
- 마)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(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)
 -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원녹지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‘도시공원’,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

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함

바)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)

사) 상위법 인용 조항 추가(안 제10조)

3) 검토 의견

○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(유해야생동물의 관리) 제2항에 따라,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바,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